

<붙임>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3. 10.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이정일 위원장

1. 들어가며

사육곰의 관리에 관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2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두 법안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위 두 법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면서 CITES 협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장하나 의원안과 최봉홍 의원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법안명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연월/ 발의자	· 2013년 3월 6일 ·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16인	· 2013년 6월 10일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등 14인
제정 목적	· CITES 협약에 따른 최소한 의무 이행	· 가공품 재료용 증식금지 및 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 사육곰 증식금지 및 국가 직접관리를 통한 사육실태 개선 및 국내에서의 곰 사육 금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공품 재료 용으로의 곰사육을 조기 종식
관리계획 주요 내용	· 사육곰 증식금지 및 보상 · 사육곰 매수청구 및 협의절차 · 사육곰 위탁·관리 및 재정지원	· 보호가치가 있는 개체를 선정, 선정된 개체에 대하여만 별도 관리
실태조사 등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건강검진, 유전자분석 등 실태조사 실시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유전자분석, 개체수 확인, 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실시
학대금지	· 독극물 사용 등 학대금지	· 없음
증식금지 등 조치	· 사육자에게 수의학적 방법의 증식금지 의무부과	· 환경부장관이 사육자에게 증식금지 조치, 개체식별 조치, 개체보전 조치 등 명령
증식금지 등 조치에 따른 보상	·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산정절차 대통령령 위임	· 증식금지 및 개체식별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금 산정위원회 구성
매수	· 사육자 매수청구 시 국가 의무 매수	· 장애 또는 고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기증 받아

		안락사 시키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사육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
매수가격의 산정	· 매수절차 및 가격을 대통령령 위임	· 환경부장관과 사육자 대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평가액
매수한 사육곰의 관리	· 필요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 관리 위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준하여 관리
용도변경 사항	· 가공품의 재료 사용 등의 금지 등	· 사육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 관람용등 사육곰을 가공품 재료용 용도변경 금지 등
시행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1조(가공품의 재료 사용 등의 금지 등)는 공포 후 10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증식금지 등)는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조문별 비교

가. 제명 및 목적(장하나/최봉홍 의원안 제1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육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추가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p>	<p>법률의 명칭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가급적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법명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상, 법명은 간명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하나 의원안이 적절해 보임.</p> <p>특히 최봉홍 의원안은 사육곰의 용도변경 자체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CITES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p> <p>최봉홍 의원안은 현행 10살 이상 도축연한을 한시적으로 풀면서 사육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최대의</p>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육곰의 사육자를 지원하고 곰의 사육실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동시에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보전가치 있는 개체를 선별하여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CITES상 곰과 전종(Ursidae spp.)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므로, 사육곰 중 일부를 선별하여 보전하려는 것 자체가 CITES 및 특별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1981년 산림청이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개인에게 야생곰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가 불과 4년 만에 수입을 금지하고, 결국 1993년 CITES에도 가입하는 등 정부 정책 혼선으로 현 상태를 야기하였다는 측면이 있어, 그에 상응하여 정부도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사육곰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도 인정됨. 따라서 장하나 의원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의(장하나/최봉홍 의원안 제2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학술연구 또는 관람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2. “사육곰 부산물”이란 사육곰에서 채취하거나 채취된 것을 가공한 혈액, 쓸개, 고기, 모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곰을 말한다.</p> <p>2. “관람용등 사육곰”이란 관람, 전시 또는 학술연구 등 환경부령으로</p>	<p>(장하나 의원안 제1호, 최봉홍 의원안 제1호, 제3호에 대하여)</p> <p>최봉홍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육곰의 범위를 환경부령에 위임함으로써,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곰과 전종이 CITES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에 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사육곰을 포괄할 수 있는 장하나 의원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3. “사육자”란 사육곰을 소유한 자로서 직접 기르거나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기르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정하는 목적으로 기르거나 증식하는 사육곰을 말한다.</p> <p>3. “사육자”란 사육곰을 소유한 자로서 직접 기르거나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기르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양 법안 각 제3호에 대하여)</p> <p>양 법안 모두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기르고 있는 자’라고 하여, 위탁자(임대인)을 말하는지, 수탁자(임차인)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함.</p> <p>그러나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육곰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육을 맡고 있는 사람도 규율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육곰을 직접 기르는 소유자, 위탁 또는 임대하여 기르게 하는 자 및 위탁 또는 임차하여 실제로 기르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p>
---	---	--

다. 국가 등의 책무(최봉홍 의원안 제4조, 장하나 의원안 제6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	---------	-------

<p>제6조(사육곰 학대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사육곰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육곰과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사육곰의 사육자는 사육곰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등 사육곰의 복지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최봉홍 의원안과 같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함.</p> <p>장하나 의원안과 같이 학대행위 금지를 명시하는 것에 찬성함.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p>
--	---	--

<p>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p> <p>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p> <p>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또는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p>		<p>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사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	--	--

라. 실태조사 및 사육곰 관리계획 수립(장하나 의원안 제4조 및 제5조, 최봉홍 의원안 제5조 및 제6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5조(사육곰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건강검진, 유전자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유전자 분석, 개체수 확인, 건강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실태조사에 관하여 양 법안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최봉홍 의원안이 좀 더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p>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육곰 관리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육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육장 출입 및 조사
2. 실태조사를 위한 사육곰의 이동 및 분리 조치
3. 조사된 개체의 식별 조치
4. 그 밖에 사육곰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육곰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최봉홍 의원안은 제1조(목적)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보호가치 있는 개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곰과 전종이 CITES에

<p>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사육곰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사육곰의 증식금지 조치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4. 사육자의 매수청구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사육곰의 위탁·관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육곰의 용도변경 기준·대상·기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곰 사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가치가 있는 개체의 선정기준 등 사육곰의 가치 분류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분류가치별 사육곰의 관리방안 4. 그 밖에 사육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p>	<p>의한 멸종위기종에 해당되는 이상, 별도의 보호가치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은 농가 및 환경·동물보호단체 양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p> <p>따라서 장하나 의원안과 같이, 모든 사육곰에 대하여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p>장하나 의원안의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봉홍 의원안과 같은</p>
--	--	---

<p>④ 제1항의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임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	--	---------------------------

마. 사육곰 증식금지 및 보상 등(장하나/최봉홍 의원안 제7조 및 제8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7조(사육곰 증식금지) ① 사육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육곰 관리계획에 따라 사육곰(출생일부터 10개월 이내의 사육곰은 제외한다)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으로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사육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p>	<p>제7조(사육곰 증식금지 및 보전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육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육곰의 사육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인 증식금지 조치 2. 개체별 확인표식 주입 등 개체식별</p>	<p>증식금지조치 자체에 대하여 양 법안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p>

한다.

② 사육자는 제1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사육곰을 교배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육자는 제1항에 따른 증식금지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치

3. 용도변경 제한, 암수 또는 아종별(亞種別) 분리사육 등 개체보전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사육곰의 사육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 개체식별 조치, 개체보전 조치, 신고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곰의 사육자와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방법, 조치 결과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의 기준·방법 및 증식금지 조치 결과의 신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증식금지에 따른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증식금지 등의 조치를 한 사육곰의 사육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 또는 개체보전 조치를 한 사육곰의 사육자 : 증식금지 조치 또는 개체보전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한 곰에 대한 손실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 조치를 한 사육곰의 사육자 : 개체식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의 문제, 그리고 개인 소득창출을 위해 수입한 곰에 대해 국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12년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제181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농가, 양돈농가 또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보상 후 폐업을 유도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장하나 의원안처럼 정부 정책 잘못에 대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p>별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개체식별 조치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사육곰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증식금지등 보상금 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바. 사육곰의 매수 및 관리 등(장하나 의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부칙, 최봉홍 의원안 제9조 및 제10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제9조(사육곰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곰에 대하여	제9조(사육곰의 기증 또는 매수)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최봉홍 의원안의 경우, 일정한 사육곰의 경우 기증받아 안락사시키자는 것이나,

사육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매수절차 및 매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장애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관리가 어려운 사육곰에 대하여는 사육자가 원하는 경우 기증을 받아 안락사시킬 수 있으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육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매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사육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평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기증 및 매수 대상의 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년 이상의 사육곰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지 심히 의문임.

또한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농가 및 환경·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2012년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장하나 의원안의 경우 최대 255.8억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연차별 매수를 진행할 경우 연차별로 10년이 넘는 사육곰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묵인함으로써 실제 예산은 위 금액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장하나 의원안 제2항의 경우에는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최봉홍 의

제10조(매수한 사육곰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육곰을 매수한 경우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육곰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매년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관리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매수한 사육곰의 관리) 제9조에 따라 매수한 사육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준하여 관리한다.

원안 제2항과 같이 위임의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사.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등(장하나/최봉홍 의원안 제11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11조(가공품의 재료 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사육곰 부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사육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p>	<p>최봉홍 의원안은 관람용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p>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람용등 사육곰을 가공품 재료용으로서의 용도변경
2.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육곰을 관람용등으로서의 용도변경

②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식금지 조치 명령을 받아 증식금지 조치 결과를 신고한 사육곰에 대하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품 재료로서의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관람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임. 이 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 권리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최봉홍 의원안 제12조)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12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사육곰의 사육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사육곰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최봉홍 의원안과 같이 승계인에 대한 처분 승계 규정을 정하는 것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자. 벌칙 및 과태료 등(장하나 의원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최봉홍 의원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제12조(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육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육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사육곰,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육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육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사육곰(혈액·모근·분변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7조에 따른 실태</p>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곰을 교배시킨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곰을 교배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육곰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5조(몰수) 제7조제1항 각 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태어난 곰 및 그 곰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은 몰수한다.

<p>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p>	<p>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조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	--	--

이 부과·징수한다.

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차. 시행일(장하나 의원안 부칙)

장하나 의원안	최봉홍 의원안	검토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육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사육곰 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고, ‘가공품의 재료 사용 등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하나 의원안을 따라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p>

4. 마치며

최봉홍 의원안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까지 매우 잘 정리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봉홍 의원안은 개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수입한 곰에 대하여 국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일부 사육곰에 대하여 국가가 농가로부터 기증을 받아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등 국가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제2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육곰 문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즉 1981년 산림청이 개인의 야생곰 수입을 허용하였다가 불과 4년만인 1985년 곰 보호여론에 따라 공식적으로 곰 수입을 금지시키고, 이후 우리나라는 CITES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 방침을 믿고 곰을 수입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농가들의 재산적 피해와 사육곰의 동물복지 수준 악화의 정도를 더욱 키워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최봉홍 의원안은 보호가치 있는 개체를 식별하여 보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곰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CITES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낙농가, 양돈농가 또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보상 후 폐업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사육곰 농가의 경우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2014년)에는 증식금지조치와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막고 사육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육곰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기조로 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안을 토대로 하여,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최봉홍 의원안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